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사설30310-288	(전화번호 1131-6346)	전경규정 4 조 1 항 국장 전경사항
처리기간	A 장		
시행일자	85. 7. 18		
보존연한	10년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전경	도시계획국장 3월	도시계획국장 1985. 7. 18
제안책임자	조근호 85. 7.	도시계획국장 전경	도시계획국장 1985. 7. 18
경유	각안장조		
수신	도시계획국장 전경		
참조	도시계획국장 전경		
제목	도시계획시설(A장) 결정		
제1안 내부결재			
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시설(A장) 결정 요청이 있어 우리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동개회의(85. 6. 28)에 상정 심의 결정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정서	철부: 관계서류 1건		
제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A장) 결정 고시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A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발송	도시계획국장 전경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
계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7

서울특별시청

·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	비고
시설	시장	강남구 대치동 629 외 1필지	3131.4	

· 결정도면: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제3안

수신: 건설부 장관

참조: 도시시설계획과장

제목: 같음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거 보고합니다.

첨부: 고시문사본 및 도면각 1부

제4안

수신: 종무처장관(시:공보관) 발신: 시(국)장

제목: 관(시)보 게재 의뢰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별첨
과 같이 결정되었거 관(시)보 게재 의뢰합니다.

가. 게재구분: 고시

나. 게재건명: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다. 편집근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라. 게재내용: 별첨





철부: 고시문사본 2(1)부

제5안

수신: 강남구청장

참조: 도시정비과장

제목: 같음

1. 귀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시장)이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보하니 도면 정리 및 판제과에 통보 하여 도시 계획 업무에 만전을 가하기 바라며

2 도시 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 출은 법 제1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2의 규정에 의한 여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 공표 후 보고토록 할 것

3. 사업시행 허가시에 타법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교통 분석의 지장 여부를 감안 허가하도록 할 것

철부: 고시문사본 및 도면 각 1부

제6안

수신: 수신처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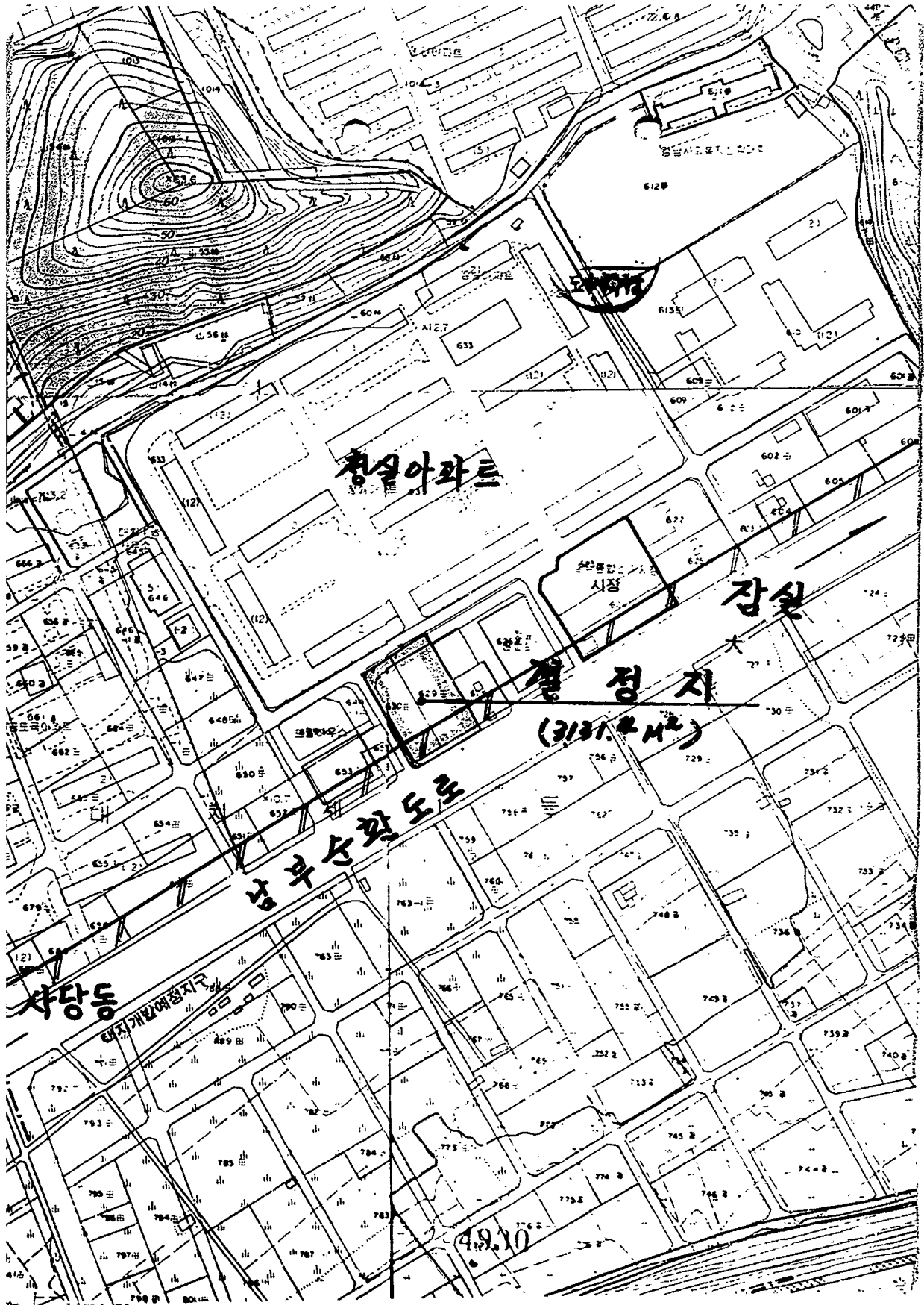
발신: 과장

제목: 같음

1.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시장)이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부: 고시문사본 및 도면 각 1부

수신처: 상공과장 도시계획과장 끝



청실아파트

시장

정지

정지
(3131.4㎡)

남부생활도로

차당동

49.10

'85.6.28.

도시 계획 위원회 회의록
=====
(2차 위원회 속개 본회의)

	안희 서장	가료계획 1계장	시설계획 2계장	시설계획 1계장	시설계획 과장	공 람
Am		LD	LD	LD	LD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위원회

○ 일 시 : '85.6.28 15:00-17:00

○ 장 소 : 소회의실

○ 안 건 :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26건

○ 참석위원

위 원	이 광 노
"	신 동 호
"	오 휘 영
"	황 명 찬
"	안 범 수
"	지 흥 원
"	장 지 남
"	장 현 익
"	김 인 식
"	최 종 무
"	정 영 섭
"	백 상 승
"	이 동
간 사	도시계획과장
서 기	도시행정계장

○ 불참위원

위원장	김 진 원
위원	김 경 동
"	노 용 희
"	김 수 근
"	도 철 용
"	안 영 배
"	여 흥 구
"	이 동 배
"	김 재 향

-/~

도시계획과장

심 의 결 과 요 약
=====

제 26 안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 성동구 광장동 120, 76-4일대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0,652㎡ 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6,918㎡	가 결 가 결
제 27 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 성동구 옥수어린이공원	가 결
제 16 안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 동작구 신대방동 351-5 도로폭 축소	가 결
제 28 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 ◦ 도봉구 노원교-시계간 도로 15건	소위원회위임
제29안	도시계획시설(도복)결정 및 변경 결정 ◦ 강동구 암사수원지 진입로(3건) 결정 ◦ 성동구 광장동 259-7 도로변경 ◦ 성북구 종암동 29-56 도로폐지	소위원회위임 가 결 "
제30안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 강남구 대치동 630의 1필지	가 결
제31안	동자동구역 제2지구 사업계획변경	가 결
제32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 ◦ 강남구 방배동 438일대	소위원회위임

위원장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

일 동 동의(가결)

○ 성북구 종암동 29-26 (도로 폐지)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 (심의안에 의함)

위원장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

일 동 동의(가결)

제 30 안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 강남구 대치동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위원장 가결될 경우 의견청취시 주민의견과 같이 지하1, 지상4층으로 건립이 가능합니까?

김인식위원 주민의 요구 사항에 따라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위원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인데도 구청산업과의 의견은 지역내 시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네요

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시 검토 반영토록하고 도시계획 결정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 동 동의(가결)

제 31 안 동자동 구역 제2지구 사업계획 변경

재개발과장 제안설명 (심의안에 의함)

동진재강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규모상 수도권정비심의대상에서 제외
코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

일 동 동의(가결)

제32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

강남구 방배동